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3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정청래·강유정·정진욱

한민수 · 신영대 · 이성윤

박균택 • 이병진 • 황정아

김현정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노동절(5월 1일)
- 7. 어버이날(5월 8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5. 노동절(5월 1일)</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u><신 설></u>	<u>7. 어버이날(5월 8일)</u>
<u>6.</u> ~ <u>10.</u> (생 략)	<u>8.</u> ~ <u>12.</u> (현행 제6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